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06

발의연월일: 2022. 9. 8.

발 의 자:노용호·김예지·김용판

배현진 • 서일준 • 신원식

양금희ㆍ이 용ㆍ이주환

정우택 · 정찬민 · 최승재

한기호 • 황보승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(ESS, Energy Storage System)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,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·풍력·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

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5).

법률 제 호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5의 제목 중 "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"를 "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"를 "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"로, "전기를"을 "전기(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유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"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"를 "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5(<u>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</u>	제16조의5(<u>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</u>
<u>업자</u> 의 전기공급) ① <u>재생에너</u>	<u>업자 등</u> 의 전기공급) ① <u>재생</u>
<u>지전기공급사업자</u> 는 재생에너	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
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<u>전기를</u>	자동차충전사업자
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	<u>전기(전</u>
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	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경우 전
다.	기자동차에 유상으로 공급할 목
	적으로 생산한 전기에 한정한
	<u>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</u>
② 제1항에 따라 <u>재생에너지전</u>	② <u>재생에너지전</u>
<u>기공급사업자</u> 가 전기사용자에	기공급사업자와 전기자동차충전
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	<u>사업자</u>
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	
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	
있다.	
③ • 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